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br>번호 | 4755 |
|----------|------|

제안연월일 : 2009. 4. 30.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4일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일 최철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7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7일 홍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0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3. 26)에 상정하고 김재윤의원 외 1인이 소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82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82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3)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청년고용률을 공기업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고,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안 제명).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행 법의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안 제4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산·학·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

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안 제8조의4 신설).

(1) 최근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런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2)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 장기 구직 청년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안 제12조).

(1)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해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국제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청년에게 해외 직장체험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등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에, 대학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어학능력 향상 등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년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청년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제목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지원”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

보건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사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

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

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단순 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환경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 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 취약계층·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
5. 정부, 기업등 및 대학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 가. 기업등
  - 나. 대학등
  -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제18조 및 제1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장 보칙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청년실업해소특별법</u><b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u>청년미취업</u>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u>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u>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년</u>”이라 함은 취업을 원하는 <u>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u>를 말한다.</li> <li>2. “<u>중소기업체</u>”라 함은 <u>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u>을 말한다.</li> </ol>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p> | <p style="text-align: center;"><u>청년고용촉진 특별법</u><b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u>청년 미취업</u>자에 대한 <u>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원</u>을 통하여 <u>청년고용을 촉진</u>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u>이바지</u>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년</u>”이란 취업을 원하는 <u>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u>을 말한다.</li> <li>2. “<u>중소기업체</u>”란 「<u>중소기업기본법</u>」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u>을 말한다.</li> </ol>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p> |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제4조(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인건비 등 경비는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을 통하여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제2장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지원

제5조(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

확대) ①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용대상기관 및 기관별·연도별 채용인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

자 고용 확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4조제1항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절감·생산성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국민생활안정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등) ①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

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미취업자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정부는 안보·국

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감시단·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미취업자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

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사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

진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청년미취업자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대체 또는 추가 고용하는 경우 채용보조금 또

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

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미취업자 고용여부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청년미취업자 고용촉진계획 수립) 정부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분야별 채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

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청년 중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본원칙)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

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단순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정보통신 등 신기술분야, 환경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분야들을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로취약계층·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

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단순 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환경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 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 취약계층·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

5. 정부, 기업등 및 대학등이

학을 통한 특화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직업훈련기관도 참여한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

제10조(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유사한 업무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공동직업훈련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

획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가. 기업등

③정부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해외인턴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에 따라 국내 대행사 등이 청년미취업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여행경비와 알선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대학등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정부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에 의한 청년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①정부는 매년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3조·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과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미취업자의 취업

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와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  
업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통  
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  
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  
용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부여) 정부는 현역군  
무중에 있는 청년의 제대후 취  
업·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체제·훈련체제·예산지  
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월전부터  
병영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와 공  
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  
로 배분·활용되도록 하여야 한  
다.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노동부  
장관은 청년미취업자의 직업지  
도, 취업지원 등 청년미취업자  
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군 복  
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  
·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  
정지원체제·훈련체제 및 예  
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  
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  
회 부여를 위한 특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정부는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업자에게 제10조 내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 시  
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청  
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  
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  
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

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

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

<삭 제>

<삭 제>

<삭 제>